



# 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21. 8. 9.(월) 조간 *인터넷 2021. 8. 8.(일) 12:00 이후 / 총 4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	과 장 주평식 사무관 김미옥	044-202-7454 044-202-746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

- 지급요건을 완화하고, 지급대상도 확대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'21.8.9.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(고용노동부 고시)」을 개정한다.

○ 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」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'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·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\*한다.

\*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분기 90만원)을 최대 2년까지 지원

○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·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,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.

□ 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」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지급요건 완화)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,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→ 6개월 이내로 연장 등

\*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고려

\* 정년 도래 이후 5~6개월의 재충전(질병 치료, 휴식 등)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

② (지원한도 상향) 피보험자수의 20%(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)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%(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)로 상향 조정

\*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(30%)와 통일

③ (지급대상 확대) '지원기간 기준일'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→ '계속고용제도 시행일'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

\* (지원기간 기준일)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 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 날 →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(1년 이내 정년도래자 없으면 제외) 문제제기

\* (계속고용제도 시행일)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(정년 연장·폐지, 재고용)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

④ (지급기간 확대) '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'까지 지급(사업주 기준) → 근로자별로 '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' 지급(근로자 기준)

□ 우리나라는 '25년 초고령사회(65세 이상 인구 20% 이상)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, '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('55~'63년생, 전체인구 15%)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.

\* 65세 이상 비중(%), 통계청) : '20년 15.7→'25년 20.3→'30년 25.0→'36년 30.5

□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"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 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"이라고 하면서

○ "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,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, 고용지원서비스 강화,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사무관(☎ 044-202-74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1**

**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」 개정 전후 비교**

구분	현행	개정
지원 요 건	○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	○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을 정하여 운영 - 정년 운영기간 1년이상 요건 삭제
	○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	○6개월 이내 재고용
지원 한 도	○(신설) ○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% 한도(5인이하 경우 180만원)	○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이면 월 임금액 한도 지원 ○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% 한도(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)
	○‘지원기간 기준일’로부터 2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	○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
대 상 근 로 자	○정년의 도달일 직전 연속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	○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사람 (피보험기간 무관)
	○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지원대상 제외	삭제 (지원대상에 포함)
지 급 기 간	○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 (사업주 기준) ○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는 1년 지급	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을 한도로 지급 (근로자 기준)
신 청 기 간	○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‘지원기간 기준일’ 1년 이내여야 함 ○지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	삭제 (소멸시효 3년 적용) ☞장려금 신청분기의 다음 달 첫날부터 3년 이내 신청
기 타	○‘지원기간 기준일’ 정의 (제2조제3호)	○삭제 - ‘지원기간 기준일’ 적용하였던 규정은 ‘계속고용제도 시행일’ 적용으로 개정
	○부동산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급대상 제외 (제3조제2항제2호)	부동산업 삭제

**붙임2**

**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」 사업 개요**

□ 지원대상 기업

○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
- 대기업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%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

□ 지원 요건

-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

**<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>**

<b>정년 연장</b>	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(1년 이상)하는 것
<b>정년 폐지</b>	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
<b>계속 고용 (재고용)</b>	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을 유지 하지만,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

□ 지원 수준

-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 (월 30만 원) 지원

□ 지원 절차

